

2025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

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844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3. 제출일자 : 2025년 5월 26일
4. 회부일자 : 2023년 5월 29일

II 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III . 주요내용

1.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및 이에 따른 예치금 증가 등을 반영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함
2. 운용규모 : 845,310백만원(당초 계획 대비 297,843백만원 증가)

<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>

(단위: 백만원)

< 수입계획 >				< 지출계획 >			
구 분	당 초 (A)	변 경 (B)	증 감 (B-A)	구 분	당 초 (C)	변 경 (D)	증 감 (D-C)
계	547,467	845,310	297,843	계	547,467	845,310	297,843
전 입 금	-	285,367	285,367	재 무 동 활	소 계	547,236	845,045 (증 54.4%)
이 자 수 입	38,568	40,770	2,202		차 입 금 원금상환	414,746	419,746 (증 1.2%)
예 탁 금 원 금 회 수	80,000	80,000	-		차 입 금 이자상환	131,920	134,430 (증 1.9%)
예 치 금 회 수	428,899	439,173	10,274		예 치 금	570	290,869 (증 50929.6%)
				행 정 영 경 비	소 계	231	265 (증 14.7%)
					기 본 경 비	231	265 (증 14.7%)

○ 수입계획 변경

-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 적립에 따라 전입금 285,367백만원 증가
 - ▶ 전입금 : (당초) 0원 → (변경) 285,367백만원
 -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(9,290억원) 중
법정의무경비(3,583억원)를 공제한 잔액(5,707억원)의 50% 적립
- 전입금 수입 증가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2,202백만원 증가
 - ▶ 이자수입 : (당초) 38,568백만원 → (변경) 40,770백만원
-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10,274백만원 증가
 - ▶ 예치금회수 : (당초) 428,899백만원 → (변경) 439,173백만원

○ 지출계획 변경

- 공자기금 원금 일부 조기상환 규모 확대로 차입금 원금상환 5,000백만원 증가
 - ▶ 차입금 원금상환 : (당초) 414,746백만원 → (변경) 419,746백만원

- 모집공채 발행 시기 분산으로 하반기 이자 상환액 2,510백만원 증가 및 기본경비(발행 수수료) 34백만원 증가
 - ▶ 차입금 이자상환 : (당초) 131,920백만원 → (변경) 134,430백만원
 - ▶ 기본경비 : (당초) 231백만원 → (변경) 265백만원

- 순세계잉여금 적립 등 수입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연도말 예치금이 290,299백만원 증가
 - ▶ 예치금 : (당초) 570백만원 → (변경) 290,869백만원

Ⅳ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1. 변경안의 개요

- 동 변경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및 이에 따른 예치금의 증가로 인해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%를 초과 변경되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¹⁾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임.

2.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 및 운용 현황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‘기금’)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²⁾에 따라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재정용자와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해에 일반·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2021년부터 설치·운영되고 있음³⁾.

< 기금의 조성자원 및 용도 >

구분	조성자원	기금용도
통합계정	- 다른 회계·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- 예탁금 원금·이자수입 등 - 공기업으로부터 회수한 용자금 및 용자금 이자수입 -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 - 다른 회계·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- 그 밖에 통합 계정 조성을 위한 수입	-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 - 공기업으로의 용자 - 예수금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 - 그 밖에 통합 계정의 운용·관리를 위한 경비

-
- 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자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- 3) 종전의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승계·통합됨.

구분	조성자원	기금용도
재정안정화계정	- 다른 회계·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* -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-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 - 그 밖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을 위한 수입	- 다른 회계·기금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- 공사채 또는 공단채의 상환을 위한 출자·보조·융자금 -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, 세외 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- 대규모 재난 및 재해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-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및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 - 그 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운용·관리를 위한 경비

*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,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, 법령에 따른 의무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의 50% 이상으로 함.

- 당초 계획 상 재정안정화계정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,849억 7천만원으로, 385억 6천 9백만원을 수입하고, 5,468억 9천 7백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말 1조 932억 9천 9백만원 대비 5,083억 2천 9백만원(△46.5%)이 감소할 예정이었음.

<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당초 조성계획 >

(단위: 백만원)

2024년도말 조성액	2025년도 조성계획			2025년도 말 조성액
	수입	지출	증감	
1,093,299	38,569	546,897	△508,329	584,970

3.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- 재정안정화계정의 2025년 기금운용계획은 1차례 변경(2025.5.22.)되었으며, 이에 따라 2024년도 결산에 따라 수입·지출 운용 규모가 당초 5,474억 6천 7백만원에서 2,978억 4천 3백만원(54.4%)이 증가한 8,453억 1천만원으로 변경됨.

< 2025년 재정안정화계정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>

(단위 : 백만원)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
구분	당초 (A)	변경 (B)	증감 (B - A)	구분	당초 (C)	변경 (D)	증감 (D - C)
계	547,467	845,310	297,843	계	547,467	845,310	297,843
전입금	-	285,367	285,367	재무 활동	소계	547,236	845,045 (증 54.4%)
이자수입	38,568	40,770	2,202		차입금 원금상환	414,746	419,746 (증 1.2%)
예탁금회수	80,000	80,000	-		차입금 이자상환	131,920	134,430 (증 1.9%)
					예치금	570	290,869 (증 50929.6%)
예치금회	428,899	439,173	10,274	행안 경정 영비	소계	231	265 (증 14.7%)
					기본경비	231	265 (증 14.7%)

가. 수입

- 전입금은 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⁴⁾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9,290억원 중 법정 의무경비(3,583억원)을 공제한 잔액(5,707억원)의 50%에 해당하는 2,853억 6천 7백만원이 적립됨에 따라 순증함.
-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의 적립이 증가됨에 따라 이에 연동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22억 2백만원(5.7%)이 증액됨.

4) 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자원과 용도)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. 이 경우,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.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

나.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

다.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

- 예치금회수는 2024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102억 7천 4백만원(2.4%)이 증액됨.

나. 지출

- 차입금 원금상환은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⁵⁾에서 2024년도에 융자한 원금의 일부를 추가로 상환하기 위해 50억원(1.2%)을 증액함⁶⁾.
- 차입금 이자 상환은 2025년 모집공채를 상·하반기로 분산하여 발행함에 따라 하반기 발생 이자가 증가하여 25억 1천만원(1.9%)을 증액함.
- 예치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 등의 수입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,902억 9천 9백만원(50929.6%) 증액함.
- 기본경비는 2025년 모집공채의 발행횟수가 당초 3~4회에서 6~8회로 증가함에 따라 발행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3천 4백만원(14.7%)을 증액함.

라.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%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⁷⁾.

5)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라 정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용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,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

6) 당초 200억원 상환 예정이었으나 250억원으로 상환 규모를 증액함.

7)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- 이번 변경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면서 정책사업비⁸⁾가 54.4% 증가됨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타당한 사유에 해당함.
- 다만 최근 국내경기 악화로 인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서울교통공사, 서울에너지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채무는 증가하여 재정안정화계정의 안정적인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수지개선 및 채무감축 노력에 경주할 필요가 있음.
- 한편 서울시는 제안설명에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제출 근거로 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6조를 제시하고 있음.

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16조(보고)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

- 그러나 동 조문은 계획 변경의 규모가 정책사업비의 20% 미만일 때에 해당하는 ‘상임위 보고’에 관한 규정으로,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규모가 정책사업비의 20% 이상일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를 적용해야 함에도 서울시는 이를 잘못 적시한바, 변경안 제출시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최 범 준	02-2180-8056

8) 일반기금의 정책사업비 변동은 비용자성사업과 용자성사업의 변동으로 발생하지만,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,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별도의 사업 없이 재무활동이 정책사업임.